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10. 1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문종명 배터리첨단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온 지역 철강·소재부품기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 시행과 글로벌 탄소규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기술지원과 저탄소 전환지원을 연계·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간사업비를 66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으로 증액하고 탄소전환컨설팅 및 저탄소·공정고도화를 지원하는 ‘철강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역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철강·소재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험·분석 인프라, 축적된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여 기업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의 현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5년간(2027~2031년) 재계약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함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 수탁기관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 위탁방식 : 재계약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사업목적 : 지역 철강·소재부품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총사업비 : 5,000백만원(도비 1,500, 시비 3,500)

※ 2027년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비 700)

❍ 사업내용

- 철강혁신기업 육성 : 탄소전환컨설팅, 저탄소·공정고도화 지원
- 저탄소전환 기반 조성 : 소재부품고도화R&D, 시제품제작, 특허·인증
- 기술경쟁력 강화 : 시험분석 및 기술 전문가 매칭
- 환경 변화 대응 : ESG·산업안전 컨설팅, 탄소중립 교육 및 기술교류

❍ 위탁업무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기업 모집·선정

-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제 관리
- 사업비 집행·정산,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 위탁운영 필요성

-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
  · 소재·부품 R&D, 탄소전환컨설팅, 시험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기업별 기술수요와 공정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문인력·시험분석 장비·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 축적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연속성 확보
  · 2016년부터 축적한 기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와 신규 저탄소 전환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사업은 기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더해 탄소전환컨설팅 및 저탄소·공정고도화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철강·소재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검토결과, 본 사업은 지역 철강·소재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2016년부터의 사업 수행 경험을 고려할 때 위탁 추진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동의안의 의결은 위탁의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로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와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심사·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